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5. 24 선고 2021가단52905(본소), 2021가단59982(반소) 판결
[배당이의 ·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웅

변 론 종 결 2022. 4. 26.

판 결 선 고 2022. 5. 2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1. 1. 13.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3.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배당액 39,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배당액 7,941,364원을 46,941,364원으로 각 경정한다.

반소 :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E단체가 2021. 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년 금제73호로 공탁한 48,134,4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C는 E단체와 F에 대하여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9. 10. 1.경 F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E단체에 대한 48,134,400원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C는 2021. 1. 13. 원고와 사이에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E단체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C에 대하여 2016. 8. 12.자 30,000,000원의 대출금 등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2019. 12. 12.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9가단6664호), 이 법원은 2020. 3. 20. “C는 피고에게 48,022,637원 및 그 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579%,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59%, 9,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05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E단체는, 피고가 이 법원 2021타채114호로 C에 대한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을 압류하고, 대한민국이 어선원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2021. 1. 14. C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 중 1,322,090원을 압류하자,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21년

금제73호로 이 사건 보험금 48,134,400원을 공탁하였다.

마. 그 후 위 공탁금에 대하여 이 법원 D로 배당절차 사건이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21. 3. 30.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2019. 9. 17.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 앞으로 39,000,000원을,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앞으로 7,941,364원을 각 배당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1. 4. 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바 없으므로, 본소로서 이 사건 배당표를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반소로서 그 취소 및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원상회복을 구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1) 피보전권리의 존재

피고의 C에 대한 제1의 다.항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은 피고가 사해행위라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C의 채무초과 여부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G기관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군산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피고에 대한 제1의 다.항 기재 판결금 채무, H조합에 대한 대지급금 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3) 사해행위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피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과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원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C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C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차례 변제를 독촉한 바 있는 점, 원고는 2013. 6. 4. C로부터 공정증서를 받는 등 C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와 C는 인척관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C가 무자력인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 대하여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 2021년 금제73호로 공탁된 48,134,400원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그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현재 이 법원 2021년 금제73호로 공탁된 48,134,4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채권자로서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범

별지